

*** 공지사항 ***

제2회 「올해의 전자공업 대상」 안내

1. 목적 : 매년 전자공업을 결산하면서 분야별로 공이 큰 사람을 발굴, 포상함으로써 전자공업인의 사기 진작, 전자공업 진흥을 도모하고 그 공적을 전자공업 역사에 기록하여 기리고자 함
2. 시상부문 및 추천대상
3. 신청 추천인원 : 근로자 (관리직 및 기술자 포함) 종업원 기준
 - 1,000명 이하 업체 : 부문별 각 1명
 - 1,000명 이상 업체 : 부문별 각 2명 까지 신청 가능
4. 구비서류 : 추천(신청)서 1부 소정양식 별첨, 공적조서 1부 소정양식 별첨
5. 심사 :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 별도 기준에 의해 심사
6. 신청기한 : '94. 1. 20 (목)
7. 시상 : '94. 2월(본회정기총회시)
8. 접수처 : 본회기획과(추천 마감일까지 본회 도착분에 한해 접수)
9. 문의처 : 본회기획과(TEL : 563-7377, 553-0941/7)

전략물자 수출입 공고 개정 고시 안내

상공자원부 고시 제 1993-113호
전략물자 수출입공고(상공자원부 공고 93-3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993. 12. 23
상공자원부장관

제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수출허가 요건) ① 수출허가기관의 장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 수출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수출을 허가한다.

1-5호 현행과 같음

6. 별표 2의 전략물자의 규격과 성능 각 호에 규정된 행정예외 대상품목은 당해 우호적 고

려 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

7. 별표 2의 전략물자의 규격과 성능 각 호에 규정된 우호적고려 대상품목은 당해 우호적 고려 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와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수출물품의 기술수준과 군사·외교적 민감성

나. 최종사용자와 최종사용자가 확인한 사용 용도의 신뢰성 및 다른 용도로의 전용 가능성
다. 기타 수출허가기관장이 수출허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절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절 특별수출허가

제 12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포괄 수출허가)

①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포괄수출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전략 물자 포괄수출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3호 현행과 같음

4. 제 13호 서식에 의한 수입자의 최종수하인 진술서

5-6호 현행과 같음

제 17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17조의 2(수탁가공 전략물자 수출허가)

① 상공자원부 장관은 「나」자역 국가의 기업과 맺은 수탁가공 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장기계약에 따라 전략물자(일반산업용물자에 한 한다.)를 위탁자의 주문에 따라 「나」지역 또는 「다」지역 국가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계약의 범위내에서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포괄적으로 수출을 허가할 수 있다. (이하 수탁가공 전략물자 수출허가라 한다.)

② 상공자원부 장관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가공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할 경우 조건을 부칠 수 있다.

③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가공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11호서

공지사항

식에 의한 수탁가공 전략물자 수출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 3조 제 1항 각호의 구분에 따라 상공자원부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수탁가공 계약서

2. 메뉴얼, 카탈로그 또는 사양서 등 수출품의 성능과 용도를 나타내는 서류 중 하나
 3. 별지 제 13호 서식에 의한 위탁자의 최종 수하인 진술서
 4. 수출자의 전략물자 관리 서약서
- ④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가공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받은 자는 반기별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수출허가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략물자의 생산 수출실적

2. 위탁자가 공급하는 원자재가 전략물자인 경우 당해 원자재의 수입실적
- ⑥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가공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받은 자는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한 수출승인을 신청할 경우 상공자원부장관이 발급하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수탁가공 전략물자 수출승인 기록부를 작성하여 수출승인 신청시마다 수출입 승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 22조에 단서를 신설하고 동조 각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2조(수입증명서 제출의 면제) 수출허가 기관의 장은 제 3조 제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나」지역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하고자 할 때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입증명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 3호 내지 제 6호의 경우에는 「다」지역으로의 수출에도 이를 적용한다.

1-2호 : 현행과 같음

3. 외국에서 수리한 후 재반입 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
4. 전시회 등에 참가하기 위하여 일시 반출하는 경우
5. 선박 또는 항공회사가 외국의 지사에게 자

사의 항공기 또는 선박의 수리용 부품 및 부분품을 수출하는 경우

6. 수입한 전략물자를 불량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수출자에 반송하는 경우
전략물자 수출입공고 별지 제 11, 제 12 및 제 1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규 제정한다.

별지 서식 : 별지와 같음(생략)

전략물자 수출입공고 별표2의 전략물자의 규격과 성능 중 제1부 산업용물자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별표 2 전략물자의 규격과 성능중 개정안 :

별첨과 같음(생략)

※세부 개정 내용 및 품목에 대해서는 상공부 자원부 무역협력과(504-4148) 또는 본회 무역과(554-6739)로 문의 바랍니다.

<전략물자 수출입 공고 개정(안) 배경>

1. 개정 필요성

'93. 10월 COCOM의 결정에 의하여 개정된 통제대상 전략물자를 우리나라 전략물자 수출입공고에 반영하고 전략물자 수출입 공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 수출허가절차 개선 및 구비서류 간소화

2. 개정(안) 주요골자

가. 통제대상 전략물자의 축소 및 통제기준 완화

◦ COCON의 결정에 의하여 통제해제 또는 완화가 결정된 품목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기 위하여 전략물자 수출입 공고상 전략물자 목록을 개정

– 통제대상에서 삭제된 품목 : 2개 품목

(다기능 집중이온빔형 반도체 제조장비, 전기통신용 디지털 신호처리장비)

– 통제기준이 완화된 품목 : 19개 품목

(반도체, 컴퓨터 보조기억장치 등)

– 행정예외 또는 우호적고려 조항이 완화되거나 신설된 품목 : 123개 품목

(전기통신용, 모뎀, 무선장비, 컴퓨터 등)

* * * * * 공지사항 * * * * *

분야별 통제대상 전략물자의 축소 및 기준완화 품목수

구 분	전체 품목수	통제품목 완화		기타완화 사항	
		통제대상 삭제	통제기준 완화	행정예외 확대	우호적고려확대
신소재	30	—	—	30	30
소재가공	29	—	—	27	27
전자	27	1	7	1	1
컴퓨터	8	—	2	2	1
전기통신	23	1	3	—	—
센서	31	—	6	20	6
항법및항공	9	—	—	8	8
전자공학					
해양기술	19	—	—	19	19
추진장치	19	—	1	7	7
계	195 (100.0)	2 (1 %)	19 (10%)	114 (58.4%)	99 (50.7%)

* 우호적 고려중 90개 품목은 행정예외와 중복

나. 수출허가 절차의 개선 및 구비서류 간소화

행정예외 및 우호적 고려에 의한 수출허가(제4조)

- 현행

— 명시적 규정없이 품목리스트에만 규정

- 개정

— 행정예외 대상 품목은 행정예외 조건에 합치될 겨우 허가할 수 있음을 명백히 규정

— 우호적고려 대상품목은 민감도가 낮은 경우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재량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간소화

* 우호적고려 대상품목은 COCOM의 동의를 얻어야 수출허가가 가능하나, 민감도가 낮은 품목의 경우 우리정부 재량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미축과 교섭, 미측의 양해를 얻은 바 있음('93. 10. 동경세미나)

포괄 수출허가 신청시 첨부서류의 간소화(제12조)

- 현행

— 외국의 수입자의 주문에 따라 수출자가 지정하는 제3국의 수하인에게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경우 수입자와 최종수하인의 진술서를 모두 첨부

- 개정

— 외국의 수입자의 진술서와 계약서를 첨부하여 수출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간소화함

수탁가공 수출허가제도의 신설(제 17조의 2)

- 현행

— 외국기업과 수탁가공 계약을 맺은 기업으로서 원·부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받아 가동·조립한 후 수출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선적시마다 수출허가를 받아야 함

- 개정안

— 수탁가공계약을 맺은 업체가 계약기간내에 가공품을 수출하는 경우 계약을 범위내에서 포괄적으로 수출을 허가할 수 있음

— 수탁가공 수출허가 대상 : 수탁가공계약을 체결한 기업

— 허가 요건 및 첨부서류

- 수탁가공 계약서

- 외국의 위탁자가 서명한 수하인 진술서

- 우리나라 수탁자의 서약서

— 허가의 효과

- 수탁가공 계약 기간내에 외국의 위탁자 또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외국의 수입자에게 수출하는 계약물품에 대하여 일괄하여 수출을 허가함

— 허가의 조건

- 공급받은 원·부자재 및 생산제품의 관리의무이행

- 분기별 수출실적 보고

수입증명서 제출 면제 대상의 확대(제22조)

- 현행

— 정부 또는 대학 등에 수출하는 경우 : 「나」 지역 국가만 적용

공지사항

◦ 개정

- 면제대상 확대

• 외국에서 수리한 후 재반입 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

• 전시회 등에 참가하기 위하여 일시반출하는 경우

• 선박 또는 항공회사가 외국의 지사에, 자사의 항공기 또는 선박의 수리용 부품 및 부품을 수출하는 경우

• 수입한 전략물자가 불량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수출자에게 반송하는 경우

- 면제대상 국가의 확대 : 「나」, 「다」 지역 국가에 적용

부정무역 신고센터 설치 운영 안내

무역 및 외환시장의 개방과 통관절차의 간소화 추진이 가속화됨에 따라 합법을 가장한 부정무역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부정무역의 수법은 점차 지능화되고 산업기술의 고도화에 따라 부정무역에 관한 정보수집이나 분석을 세관직원들에게만 의존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부정무역 되는 물품과 동종 또는 경쟁물품을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로부터 시장 동향 및 유통 등에 관한 제보를 받아 관세행정에 수용한다면 부정무역의 방지 및 단속은 매우 효과적일 것입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부정무역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니 각 회원사들은 부정무역이 근절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2회 제네바 국제 발명·신기술 및 신제품 전시회 모집 안내

1. 목적 : 국내기업인 및 개인 발명가가 개발한 발명 및 신기술제품을 국제무대에 진출시켜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우리의 상품 및

기술 수출의 계기를 마련하여 국가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관 : 한국발명특허협회

3. 후원 : 특허청

4. 기간 : 1994. 4. 15 ~ 4.24(10일간)

5. 장소 : 제네바전시회의 센타(Palexpo)

6. 출품대상 : 개인, 중소기업, 대기업

7. 출품방법 : 본인참가 전시(단, 위탁출품 전시자는 위탁비용 부담)

8. 전시료 : 현지 전시장에서 전기료, 수도료, 전화설치료 등은 별도임

① 부스 사용료 : - 진열대 부스(1.5m) : 개인 : SF 1,300(약 721,000원)

기업 : SF 2,000(약 1,110,000원)

- 바닥전시부스(4m) : 개인 : SF 1,500(약 832,000원)

기업 : SF 2,200(약 1,220,000원)

② 카다로그 제작료 : SF 140(약 77,000원)

10. 신청접수기간 : 1994. 1. 3 ~ 1994. 1. 31일 까지

11. 문의처 : 한국발명특허협회 발명지원부(☎ 551-5571~2)

12. 출품심사-본회에서 구성한 심사위원회에서 발명품의 기술적 우수성(신규성, 진보성, 작용효과), 기업성, 기타 국제전시회의 출품여부 등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발명(고안), 신기술 제품에 한하여 출품토록 하여 출품 심사시 현물 또는 도면 등 상세한 설명자료를 지참하여 심사위원에게 본인이 직접 설명함.

13. 출품접수비 : 10,000원(출품물 1건당)

14. 출품참가여비 및 체재비 : 출품자 부담

15. 출국 및 귀국일자 : 추후결정

16. 특전

◦ 전시출품자는 출품료(부스료, 번역료, 통역비)에 한하여 정부보조금 지원을 추천함.

- 개인 발명가(학생 및 영세발명가 포함)는 출품비용 전액을 중소기업자는 출

*** 공지사항 ***

품비용의 80% 범위 내(대기업 제외)

-년 2개 부스(한 전시회당 1인 1부스 1건에 한함)에 한하며 통역비는 출품건당 10만원 이내

-개인 및 중소기업자의 출품비용이 예 산액을 초과시, 개인에게 우선 교부하고 잔액을 중소기업자에게 배분조정

◦ 전시회에 출품하여 수상한 발명품은 전 국우수발명전시회 및 발명장려관에 전시 토록 함.

JCCI '94 논문모집 안내

대한전자공학회의 통신연구회와 전자교환 연구회, 한국통신학회의 데이터통신연구회, 교 환연구회, 위성통신연구회, 이동통신연구회, 한국통신정보보호학회의 통신 및 네트워크 보 호부문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4회 학술 대회를 1994년 4월 28일, 29일, 30일, 3일간 강원도 춘천에서 개최합니다.

이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연구논문을 공모하 오니, 아래의 절차를 참조하여 투고하시기 바 랍니다.

1. 논문제출 절차

먼저 논문의 요약문을 논문투고 분야를 명 시하여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학술위원회가 논문발표 승인여부를 심사통보합니다.

본학술대회에의 논문 발표가 승인되는 경 우, 필히 논문을 제출해야 하며, 또한 당일에 논문발표를 꼭 해야만 합니다.

(1) 논문요약문(800단어 이상) 및 설문지제출

: 1994년 1월 22일까지

(2) 심사결과 통보 : 1994년 2월 28일까지

(3) 사진복사가능한 5쪽이내의 논문제출 : 19

94년 4월 1일까지

2. 요약문 및 논문제출처

121-742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1번지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 홍대형 교수

전화 : (02) 705-8470, Fax : (02) 706-4216

3. 논문투고 분야

정보통신, 통신이론, 전송, 교환, 통신망, ATM/ISDN, 위성통신, 이동통신, 개인휴대 통신, 통신정보보호, 통신신호처리, 고속프 로토콜, 통신소프트웨어, 무선데이터 등 통 신 및 정보분야 전반

국민 건강 생활 지침 안내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생활 수준 의 향상과 더불어 건강에 대한 관심은 높아가고 있으나 질병예방과 건강생활을 위한 생활 양식의 변화는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보건사회부에서는 보건교육사업의 일환으로 현시대에 알맞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하여 국민모두가 기본적으로 실천이 가능하며 생활화, 습관화 함으로써 건강 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민생활지침” 을 만들어 평소 국민 각자가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건강실천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사 전직원에게 확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생활지침〉

1. 청결을 생활화 합시다.
2. 음식은 싱겁고 가볍게 골고루 먹읍시다.
3. 예방접종과 건강진단은 때 맞추어 받읍시 다.
4. 과음하지 말고 담배는 피우지 맙시다.
5. 규칙적인 운동으로 신체의 활력을 유지합 시다.
6. 일하며 보람찾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갑 시다.
7. 공공질서 지키며 안전사고를 예방합시다.
8. 아껴쓰고 적게 버려 건강한 환경을 만듭시 다.

전자제품 수출추천 요령안내

전자제품 수출추천 요령안내

한국전자공업진흥회 공고 제122호
수출입공고(상공자원부 고시 제93-113호) 제8조에 의하여 전자제품 수출추천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3. 12. 30.
한국전자공업진흥회장

—다 음—

1. 수출추천대상품목 및 추천기준

H	S	추천대상품목 및 지역	추천기준
8516.50		마이크로 웨이브 오븐 (EC,EFTA)	E C : 자율규제 물량범위 내에서 추천 기타 : 제한없이 추천
8521. 10 90		녹화재생기 (VTR) (EC, 미국)	일정가격 이상인 경우에 추천
8523. 13		비디오 녹화용 테이프(EC)	일정가격 이상인 경우에 추천
8528. 10		칼라텔레비전 수상기(EC)	
8540. 11		텔레비전용 음극선관〈천연색〉(EC)	자율규제 물량범위내에서 추천

구 분	추 천 내 용
(업계)	
수 출 부 문	해외신시장 개척, 신상품 수출 등을 통하여 수출 증대에 기여한 자
기 술 부 문	신기술 개발, 부품 및 제품의 국산화로 무역수지 개선에 기여한 자
기 능 부 문	공정개선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자
근로부문	품질 및 생산성 향상, 노사관계 정착 등 일하는 풍토 정착에 기여한 자
(업계 및 단체)	
협 동 부 문	전자업계간 상호협력, 공동사업 추진 등 공동이익 도모에 기여한 자
진 흥 부 문	전자공업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자
(공로 감사패)	
정 책 부 문	전자공업의 육성, 발전을 위해 기여한 전·현직정부 인사
산·학 협동부문	산·학간 공동기술개발 및 연구에 기여한 학계 인사

2. 추천기준

- 가. 수출자율규제 대상품목은 동운영요령에 의한다.
- 나. 기타품목은 별도요령에 의한다.
- 3. 처리기한 : 즉시
- 4. 구비서류

- 가. 수출승인신청서 4부
- 나. 수출신용장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추천장소

- 가. 한국전자공업진흥회

- 나. 한국무역협회 지부

- 부산지부(부산시 중구 중앙동 4가 87-2)
- 광주전남지부(광주시 금남로 2가 24-2)
- 전북지부(전북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658-17)
- 대전충남지부(대전시 중구 선화동 226)
- 대구경북지부(대구시 동구 신천4동 299-2)
- 충북지부(충북 청주시 운천동 1571)
- 경남지부(경남 창원시 신월동 97-6)
- 인천지부(인천시 남구 주안동 989-1)
- 강원지부(강원도 춘천시 운교동 179-7)

-부 칙-

- 1.이 요령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요령이전의 제 119호는 이 요령 공고와 함께 폐지한다.